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5년간 영등포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6건이 발생 하였고, 인명피해는 총 90명(사망자 10명, 부상자 80명), 추산 재산피해액은 약 54억 9,616만원에 육박하며, 매년 수백 건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화재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재난지원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사회재난지원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전제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화재피해가 발생하여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위험이 있어도 대규모의 화재피해가 아니면 구민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2025. 8.)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보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정서·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화재피해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 안 제2호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을 ▲화재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민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화재피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제외)는 ▲보험가입자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고의적 화재 등 불필요한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한편, 긴급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는 ▲심리상담 ▲임시주거 ▲폐기물 처리비 ▲긴급급식 ▲응급구호세트 등 화재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으로 규정함.
- 또한 안 별표에서 지원사항·기준 및 처리부서를 명시하였는데, 지원사항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지원금 환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과 조례와 달리, “화재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거주가 힘들거나 안전피해 우려가 있는 구민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심리회복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긴급급식 등다양한 생활재건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화재피해 구민이 보다 원활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
------------	-----

발의연월일: 2025. 8.

발 의 자: 김지연·전승관·최인순

정선희 의원 (4인)

## 1. 제안이유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
    - 나. 단전·단수·가스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 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민
- 제3조(구청장의 책무)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지원
2. 임시주거시설 지원
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4. 긴급 급식 지원
5. 응급구호세트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원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안) 제5조 관련

지원사항	지원기준	처리부서
심리상담 지원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폐기물 처리 영수증에 따라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소·화재폐기물 처리시 최대 2백만원 반소·화재폐기물 처리시 최대 1백만원	도시안전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지원기간 : 최대 7일 지원기준 : 각 가구 당 지원 「재해구호법」 상의 임시주거시설을 제공 하거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숙박업소 사용 비용 지원 숙박업소 사용지원은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복지정책과

긴급급식 지원	<p>지원기간 : 최대 7일</p> <p>지원기준 : 개인 당 지원</p> <p>「재해구호법」 상의 긴급급식 기준에 따라 지원하거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 개별급식비 지원</p> <p>개별급식비 지원은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 급량비 기준을 준용</p>
응급구호세트 지원	<p>지원기준 : 개인별 지원(남· 여 구분)</p> <p>화재피해 주민의 필요 시 재해구호법 상 응급구호세트 지원</p> <p>응급구호세트 구성 내용: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p>